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2016. 5. 29)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 필요한 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목적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재향군인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easuga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②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향군인</u> 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② 생략 〈신설〉	제5조(예산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지방재정법」 “일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5조제3항(예산의 지원)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향군인회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에 의함
- 요구내역 : 단체운영 보조비(급여지원)
 - 500,000원 / 월 x 12월 x 2명 = 12,000,000원

나. 추계 결과

- 5년간 추계

(단위 : 천원)

항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단체운영 보조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세출	단체운영 보조비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60,000
	소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60,000
	일반회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